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3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4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수급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는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제 공 시 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신원 인수인 권리와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신원 인수인 권리와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의무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 재가 급여비용의 범위

혜택 구분	공단/개인 부담 비율		합계(%)
	부담비율 구분	월 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	공단 부담금	85%	100%
	개인 부담금	15%	
감경 대상자	공단 부담금	91%	100%
	개인 부담금	9%	
	공단 부담금	94%	
	개인 부담금	6%	
기초생활 수급자	공단 부담금	100%	100%
	개인 부담금	0%	

※ 혜택구분 중 감경대상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되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 됩니다.

2021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원)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